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2.10.26. 규칙 제61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학칙 제3조의2에 의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는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이하 “총장후보자”라 한다)를 초빙·추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초빙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겸임금지)** 초빙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장 총장후보선정 공고 등

**제4조(총장후보자 공모 공고)** 초빙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4개월전에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 ① 총장후보자는 접수 기간 동안(공휴일은 제외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초빙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 서류, 후보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신고, 그 밖의 후보자 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종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3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의한 보직자(학과장 제외)가 아닌 자

**제7조(총장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총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들에게 금전·물품·향응 제공
2. 위원들에게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후보자가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3. 위원들에게 타인이 총장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허위 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의 비방
5. 위원들에 대한 보직 약속
6. 제3자를 통해 총장후보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공모 공고 전후 교원·직원 등 대학구성원(잠재적 위원후보자)에게 총장선정 관련 전기통신방법에 의하거나 교수연구실 방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8. 특정후보자를 위한 후원회를 구성하거나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9. 기타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초빙위원회)는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초빙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장 총장후보초빙위원회

- 제8조(초빙위원회의 구성)** ① 총장후보자를 공모·초빙하여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위원회를 둔다.
- ② 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전까지 초빙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초빙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원위원 6인
  2. 직원위원 1인
- ④ 초빙위원회 위원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원위원은 전문실기분야 2인, 전공이론분야 2인, 전공실기분야 1인, 교양 교직분야 1인을 선발하되, 각 분야별 교원들이 본인의 소속분야(배정우선교과 목 기준)의 1인을 추천하여 각 분야별로 다득표자 순으로 선발한다. 당사자가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 직원위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회의에서 다득표자 1인을 선발하며 당사자가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⑤ 초빙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⑥ 위원장은 초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초빙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교원 위원은 제4항제1호에 의한 차득점자로 하고, 직원위원은 제4항제2호에 의한 차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⑨ 초빙위원회는 초빙위원회를 최초 소집 공고한 날부터 총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로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9조(초빙위원회의 기능)** 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후보자의 공모 및 공모일정 확정
2. 1인 이상의 외부총장후보자의 추천 또는 초빙
3. 교내·외 총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 추천

4. 추천위원회 위원 선발 관리 및 최초의 추천위원회 소집
5. 총장후보자 초빙 과정의 행정적 절차 운영
6. 총장후보자의 연구윤리 검토 및 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필요시 한 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
7. 기타 공정한 총장후보초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0조(총장후보자의 초빙)** 초빙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초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장후보자 초빙을 위한 홍보 및 노력
2. 총장후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제11조(초빙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빙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초빙위원회 위원이 전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결격사유 발생 일로부터 초빙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초빙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초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4조의 초빙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불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경우

**제13조(초빙위원회 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초빙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총장후보자가 된 때에는 관련된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초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총장후보자로 입후보하거나 총장후보자로 위촉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초빙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초빙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② 초빙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초빙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후보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빙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초빙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 중 지득한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총장후보자 정보 또는 초빙정보를 누설하는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인터넷, TV, 신문, 잡지, 라디오 및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제한이 없으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⑤ 초빙위원회는 소속위원이 총장후보초빙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될 경우 형사고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초빙위원회의 의결)** 초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4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16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초빙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 만료일 3개월 전 까지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최초의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1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1. 교원위원 10인(여성위원 3인 포함)
2. 직원위원 2인(여성위원 1인 포함)
3. 유관기관위원 2인(본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WPTM포함>는 제외)
4. 동문위원 1인(본교에 재직 중이거나 출신학과<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는

종목>가 총장후보자의 출신학과와 같은 자는 제외함)

5. 학부모위원 1인(본교에 재직 중이거나 학생의 소속이 총장후보자의 학과(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는 종목)와 같은 자는 제외함)

③ 추천위원회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원위원의 선발은 다음 각 목에 의하며 모든 교원은 추천위원 선발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추천위원으로 선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가. 교원위원 10인 중 4인은 모든 교원이 본인의 소속 분야(배정우선교과목 기준 전문실기, 전공이론, 전공실기, 교양교직분야)에서 다득표자 1인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가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하며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나. 기 선발된 위원을 제외한 모든 교원의 이름이 표기된 용지를 성별로 구분하여 추첨함에 넣는다. 여성위원은 가족의 선발결과를 반영하여 부족한 여성위원 수 만큼 선발하되, 1인은 여성교수들의 추천으로 다득표자를 선발하고, 그 외는 여성교수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선발한다.
  - 다. 나목에 의한 여성위원 선발 후 나머지 위원은 남성교수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선발한다.
  - 라. 나목과 다목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하는 5인은 교수 2인, 부교수 2인, 조교수 1인으로 직급별로 인원을 제한하여 선발한다.
2. 직원위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회의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발하며 당사자가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3. 유관기관위원 중 1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으로 선발한다.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없을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추천한다.
4. 유관기관위원 중 1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으로 선발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없을 경우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위원은 총동문회에서 총동문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참석임원 1인당 각각 2명씩을 추천하여 그 중 다득표자 1인을 선발한다.
6. 학부모위원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 이사를 대상으로 참석이사 1인당 각각 2명씩을 추천하여 그 중 다득표자 1인을 선발한다.
7.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을 경우 송파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인사 순으로 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20조의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새로운 추천위원회 위원을 보충하지 않는다.
- ⑦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최초 소집일부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7조(추천위원회의 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후보자를 심의하여 최종 1, 2순위 총장후보로 선정된 자(이하 “총장후보선정자”라 한다)를 총장에게 통보
2. 총장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결정

**제18조(위원 제척사유의 준용 등)** 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사유 및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초빙위원회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19조(위원의 보직 임명)**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총장 임기 개시 후 4년간 학칙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보직(학과장 제외) 임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0조(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학발전에 필요한 대학 경영능력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제21조(추천위원회의 의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2호의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총장후보선정자의 추천

**제22조(선정결과 발표)**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선정자의 선정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제23조(총장후보선정자의 추천)** 총장은 선정된 1, 2순위 총장후보선정자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4조(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제613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의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장선출에 한하여 공고일, 공고기간 등을 이 규정과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적용의 특례)** 제7조의 부정행위는 동 규정이 제정되기 6개월 전까지의 행위도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다른규정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및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